

# 지방의회 위상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15
----------	-----

발의연월일 : 2018년 8월 29일

발 의 자 : 김정태, 고병국,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 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 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110명)

##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의원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의회가 제안했던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즉각 수용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2. 제안이유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부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① 자치입법권 강화, ②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④ 자치조직권 강화, ⑤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⑥ 인사청문회 도입, ⑦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즉각 수용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3. 이 송 처

-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 지방의회 위상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촉구 결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관대립형의 자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강시장-약의회형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단체장의 권한은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원체계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부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제라도 ‘자치와 분권’,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확립된 가운데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위상의 확대·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행정의 복잡·다양한 의정수요에 부응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① 자치입법권 강화, ②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④ 자치조직권 강화, ⑤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⑥ 인사청문회 도입, ⑦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의원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의회가 제안했던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즉각 수용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